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982
----------	-------

발의연월일 : 2026. 2. 24.

발 의 자 : 강경숙 · 황운하 · 김선민
임호선 · 진선미 · 문정복
백선희 · 박은정 · 서왕진
신장식 · 김준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국가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주재원, 협력업체 근무자, 현지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가정의 학생들을 위하여 한국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 기업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기업 철수 등으로 재외한국학교의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학교가 늘어나고 있고, 이는 곧 재외한국학교의 수업료 증가로 이어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외한국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도록 하며, 한국학교 교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학교장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면서 국가가 이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의 지원을 늘리는 만큼 재외한국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임원의 책무성 및 한국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 승인 취소 사유를 국내 사립 학교 수준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25조 및 제31조의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3호 중 “이 법의”를 “이 법 또는 「초·중등교육법」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임원 간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을 때

5. 교육부장관의 학교장 및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학교장은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별도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의2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신 설>

<신 설>

④ ~ ⑥ (생 략)

제25조(교원 등의 연수) 교육부장관은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외국인인 교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의 자질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연수기관 등에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31조의2(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 국가는 학교의 장이 가

4. 임원 간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을 때

5. 교육부장관의 학교장 및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교원 등의 연수) ① -----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② 학교장은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별도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의2(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 -----

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한국학교에 <u>지원</u>할 수 있다.	----- ----- ----- ----- ----- -----<u>지원하</u> <u>여야 한다.</u>
--	--